

I. 개요

1. 일시 : 2008년 7월 2일(수) 10:30~12:00

2.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3. 참석자

▣ 발표자 : 안덕근(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

▣ 참석자

임혜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딕호드자예브 세르쵸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양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김민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교수
심기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우성훈, 지식경제부 통상협력과 사무관

4. 제목

For or Friend of GATT Article XXIV: Diversity in Trade Remedy Rules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¹⁾

- ☐ 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FTA와 WTO간의 합치성을 연구한 논문 발표
- ☐ 많은 나라들이 FTA 체결시 WTO 무역구제제도의 변형된 형태를 포함하고 있음
 - 반덤핑조치의 경우 미국-이스라엘 FTA, CAFTA-DR-미국 FTA 등은 non-cumulation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르단-싱가포르 FTA, 싱가포르-한국 FTA 등은 lesser duty rule을 포함
 - 세이프가드의 경우 MERCOSUR, NAFTA 등은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시 상대 회원국을 제외할 것을 의무조항(must or shall)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르단-싱가포르 FTA, 한미 FTA 등은 세이프가드 적용제외를 권능조항(may)으로 규정
- ☐ 기 체결된 여러 나라의 FTA협정에 나타난 반덤핑조치와 세이프가드는 무역전환효과를 유발하므로 무역구제제도는 WTO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
- ☐ 원칙적으로는 GATT 24조 8항에 의해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같은 조항 5항에 따르면 RTA의 관세 또는 다른 조치들이 pre-RTA 수준 이상 또는 더 제한적일 수 없으므로 FTA상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는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임
- ☐ 글로벌 최적(global optimum) 달성을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를 FTA가 아닌 WTO차원에서 다루어야 함

1) 자세한 내용은 발표논문 참고.

2. 토론 내용

- WTO상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의 피해판정 및 절차는 대동소이
- WTO상 피해판정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고 충분한 관계(genuine and substantial relationship)의 성립을 요구
 - 피해판정 인과관계 증명에 대해 법률가와 경제학자간에 이견 존재
 - 법률가들은 “but-for” test를 적용하는 반면 경제학자는 통계 및 회귀분석 등 수치를 통한 입증방식을 선호
- WTO 세이프가드의 근본 취지는 피해산업 및 기업에게 피해 적응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며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우는 것임
 - 그러나 현재 “원활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
- FTA상 나타난 세이프가드는 인과관계 입증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구조조정 조항은 삭제된 형태임
 - 다시 말해 WTO상 불분명했던 인과관계 입증을 강화한 반면 유명무실한 구조조정 관련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WTO상 무역구제제도를 명확·개선함
- 그러나 FTA상 세이프가드의 핵심은 세이프가드 적용시 상대 회원국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는 무역전환효과를 야기함
- FTA 무관세 혜택으로도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지만 규범의 호혜적인 변화를 통한 무역전환효과는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이는 GATT 24조에 상치되므로 법률적인 문제점도 내포
- 따라서 무역구제제도를 FTA상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WTO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끝.